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 공고 제2009-41호, 2009. 10. 21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원의 피해구제신청사건 처리시 위법사실 판단이 곤란한 경우 등이 있어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위법사실통보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개정하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 소회의 제도를 새로이 도입함과 동시에, 소비자 집단분쟁사건의 조정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 30일로 되어있는 집단분쟁조정기간을 60일로 연장하고, 집단분쟁조정사건의 대표당사자 선임, 역할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신속한 절차진행을 담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일로 연장함.(안 제68조 제 7항 개정)

가. 소비자원의 관계행정기관에 대한 위법 사실 통보 의무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변경함.(안 제56조)

라. 집단분쟁조정사건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들이 대표당사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대표당사자는 자기를 선임한 당사자들을 위해 그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표당사자의 선임 및 역할을 구체화함.(안 제68조의 2 신설)

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본회의와 소회의로 구분하여 경미한 소비자분쟁 조정에 대한 조정결정은 소회의에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 및 제63조의2 신설)

※ 자세한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집단분쟁조정기간을 현행 30일에서 60